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성평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·변경·상실을 조사할 때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, 관계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에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본증명서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고용정보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 중 “가족관계증명서”를 “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“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과세정보[종합소득명세, 일용근로자소득명세·근로장려금·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소득·재산자료와 사업자등록자료(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)]”를 “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과세정보[종합소득명세, 일용근로자소득명세·근로장려금·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소득·재산자료와 사업자등록자료(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)] 및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”로 하며,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“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”을 “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및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7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파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고용정보에
관한 자료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[별표2]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</u> <u>관련 전산망 또는</u> <u>자료(제17조의10제6항 관련)</u> 1.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<u>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</u>) 나. (생략) 2. 금융·국세·지방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.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과세정보 [<u>종합소득명세, 일용근로자소득명세·근로장려금·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소득·재산자료와 사업자등록자료(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)</u>] 나. ~ 마. (생략) 3. 토지·건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. ~ 하. (생략) 거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	<u>[별표2]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</u> <u>관련 전산망 또는</u> <u>자료(제17조의10제6항 관련)</u> 1. ----- ----- -- 가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<u>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</u>) 나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 가.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과세정보 [<u>종합소득명세, 일용근로자소득명세·근로장려금·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소득·재산자료와 사업자등록자료(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)</u>] 및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<u>근로소득에 관한 자료</u> 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 가. ~ 하. (현행과 같음) 거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

너. (생략)	<u>차 계약상황 및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</u>
4. ~ 6. (생략)	너. (현행과 같음)
7.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. ~ 타. (생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-----
	가. ~ 타. (현행과 같음)
	<u>파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고용정보에 관한 자료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47